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및 결혼·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대상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 ~안 제5조)
-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경비지원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지도감독 및 공공시설이용, 표창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1)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천구민 등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‘성인 비문해자’, ‘문자해득*(解得)교육’, ‘문해교육기관’의 정의에 대하여,
 - * 해득(解得) : 뜻을 깨쳐 앎. / 해독(解讀) : 잘 알 수 없는 암호나 기호 따위를 읽어서 풀.
 - 안 제3조에서는 문해교육의 대상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및 자발적인 학습 등 문해 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헤아려서 갖추어야 되는 시책에 대하여,
 -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에 대하여,

1) 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안 제7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,
 - 안 제8조에서는 교육기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,
 -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,
 -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제정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 능력 및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생활능력 함양에 관련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.
 -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서울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